

■ 목 차

■ 소식 ■

지평, '해외분쟁 해결방안 - 동남아시아·CIS'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3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한국 자동차부품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의 부품개발계약 검토 관련 자문... 4

한국 물류회사를 대리하여 운송계약 검토 관련 자문..... 4

한국 무역회사를 대리하여 설계계약 용역료 미수금 분쟁 관련 소송.....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안대표처의 중국 투자 Q&A 사례집 관련 용역 수행 5

한국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합작사업 관련 자문 6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강소성 현지 지사 설립 관련 자문..... 6

한국 요식업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가맹사업 관련 계약 작성 등 법률자문 7

[미얀마] BS캐피탈을 대리하여 미얀마 진출 관련 자문 8

[인도네시아]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사무소 설립 관련 자문..... 9

BC카드를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만다리 은행과의 신용카드 프로세싱 합작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관련 자문..... 9

[러시아] 삼성화재를 대리하여 러시아역외보험규정 관련 자문.....10

유니베라의 러시아 현지법인을 대리하여 부동산 실사 및 관련 자문.....10

삼성탈레스를 대리하여 러시아 노동법 및 근로계약 해지 관련 자문11

삼성물산을 대리하여 러시아 건설업/설계업 자율규제단체가입(SRO) 및 면허 취득 관련 자문.....11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상해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2014년 개정)” 공표.....12

[베트남] 자본금계좌제도 변경.....14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새로운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 공표18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수정초안 공표.....18
“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 공표18
“안전생산법” 개정안, 규정의 “집행”에 초점을.....19
[베트남]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 기준 적용 중지20
[캄보디아] 상사중재센터(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중재규칙 제정22
[인도네시아] 저작권법 개정23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사교육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정” 발효.....23

■ 소식 ■

지평, '해외분쟁 해결방안 - 동남아시아·CIS'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9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15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해외분쟁 해결방안 - 동남아시아·CIS'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각 지역전문변호사들과 미국 로펌 Bryan Cave 싱가포르사무소 대표변호사 Iain Sharp 영국변호사가 동남아시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및 CIS(독립국가연합)에서의 분쟁 발생시 유의사항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지평의 축적된 해외분쟁 해결 노하우와 경험을 고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동남아 등 해외분쟁 세미나(2014. 9. 22.)
- 에너지데일리 - '해외분쟁 해결방안 - 동남아시아·CIS' 세미나(2014. 9. 17.)
- 서울경제 - 지평, 해외분쟁 해결방안 세미나 外(2014. 8. 25.)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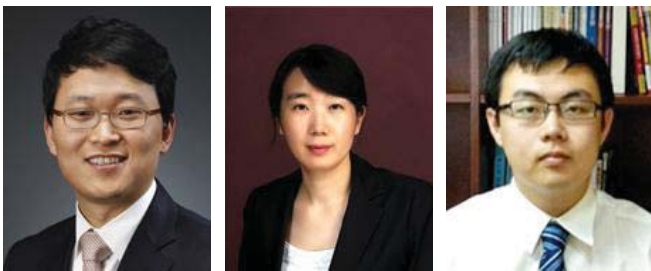
법무법인 지평, '해외분쟁 해결방안 - 동남아시아·CIS' 세미나 개최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한국 자동차부품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의 부품 개발계약 검토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자동차부품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의 부품개발계약 검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장옥염 중국변호사

한국 물류회사를 대리하여 운송계약 검토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물류회사를 대리하여 운송계약 검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형삼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무역회사를 대리하여 설계계약 용역료 미수금 분쟁 관련 소송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무역회사를 대리하여 설계계약 용역료 미수금 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안대표처의 중국 투자 Q&A 사례집 관련 용역 수행

법무법인 지평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안대표처의 중국 투자 Q&A 사례집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영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채강호 중국변호사 장욱염 중국변호사

한국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합작사업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합작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채강호 중국변호사 장욱염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강소성 현지 지사 설립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강소성 현지 지사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한국 요식업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가맹사업 관련 계약 작성 등 법률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요식업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가맹사업 관련 계약 작성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미얀마 ■

BS캐피탈을 대리하여 미얀마 진출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BS금융지주의 계열사인 BS캐피탈을 대리하여 미얀마 진출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BS캐피탈이 국내 캐피탈업계 최초로 미얀마에 진출하여 소액대출업(Microfinance)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정철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설일영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강지성 호주변호사



장성 수석자문위원
미얀마 현지법인장

■ 해외업무 사례 - 인도네시아 ■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사무소 설립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사무소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최유진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BC카드를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만디리 은행과의 신용카드 프로세싱
합작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BC카드를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만디리 은행과의 신용카드 프로세싱 합작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최유진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 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 ■

삼성화재를 대리하여 러시아역외보험규정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삼성화재를 대리하여 러시아역외보험규정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유니베라의 러시아 현지법인을 대리하여 부동산 실사 및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유니베라의 러시아 현지법인을 대리하여 부동산 실사 및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삼성탈레스를 대리하여 러시아 노동법 및 근로계약 해지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삼성탈레스를 대리하여 러시아 노동법 및 근로계약 해지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삼성물산을 대리하여 러시아 건설업/설계업 자율규제단체가입(SRO) 및 면허 취득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삼성물산을 대리하여 러시아 건설업/설계업 자율규제단체가입(SRO) 및 면허 취득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상해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2014년 개정)” 공표

(법무법인 지평 [채광호](#) 중국변호사)

지난 7월 1일, 상해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외사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2014년 개정)」(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표하였습니다. 상해자유무역구의 첫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9월 18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상해자유무역구는 설립이래 국제관례를 참조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형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외상투자기업의 진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산업 리스트를 가리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국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인허가제도 대신 신고(备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의 190조에서 139조로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그 중에도 금지류 조항은 개정 후 29조로 나머지는 모두 제한류로 분류되었는바 외국인의 상해자유무역구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개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기존의 14개에 달하는 관리항목을 취소하였고, 19개에 달하는 항목에 대한 관리를 완화하였는바, 추가 개방비율은 17.4%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하여 취소된 14개 관리조치 중 서비스 영역에만 7개가 포함되는바, 구체적으로는 인증기관 외국인 주주에 대한 자격요건 취소, 국제 해상운송화물 하역에 대한 투자제한 취소, 항공운송 판매대리업무 투자제한 등이 취소되었습니다. 기타 7개 취소 조치는 제

조업 영역에 관한 것으로 중장비제조기업에 대한 합자·합작 제한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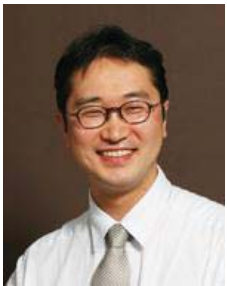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 상의 개방조치는 주로 서비스 영역과 제조업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해자유무역구에서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외상투자의 진출이 훨씬 더 용이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제한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관리조치를 기존의 55개에서 25개로 축소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중국 경외에서 3년 이상의 직접판매 경험이 있어야 하고, 설립예정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8,000만 위안 이상일 것, 기초전산업무의 경우 외국인 지분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의 공표는 상해자유무역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개방되고 개선된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자본금계좌제도 변경



(법무법인 지평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할 때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대금을 송금할 때에는 흔히 “자본금계좌”라고 알려진 현지법인 명의로 현지 은행에 개설된 특수한 용도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은 자본금계좌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인 Circular 19는 2014년 9월 22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4월 28일에는 간접투자 자금의 수수를 위한 특수한 용도의 계좌에 관한 규정인 Circular 5가 발효되었습니다.

Circular 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투자계좌의 용도

우선 종래 외국인투자법인이 개설하는 자본금계좌의 명칭이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Account)”로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성격의 자금 수수는 Circular 19에 따라 직접투자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투자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 자금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Circular 19 제7조 및 제8조 참조).

(1) 다음 목적의 자금 수령

-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외국인 및 내국인의 자본금 납입
- 외국인투자법인의 단기, 중기, 장기 역외 및 역내 대출
- 외국인투자법인의 지분/주식 양수도 대금

(2) 다음 목적의 자금 지급

- 외국인투자법인의 단기, 중기, 장기 역외 및 역내 대출 원리금 및 송금수수료
-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인의 베트남 동화 매입을 위한 외화 매도(환전)
- 외국인투자법인의 지분/주식 양수도 대금
- 배당금과 같은 외국인의 직접투자 활동으로 인한 수익
- 외국인투자법인의 해산, 청산, 감자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자금 반환

종래에는 대출기간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대출에 한해서만 자본금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Circular 19에 따라 단기 대출도 자본금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금의 수수료는 Circular 5에 따라 “간접투자계좌(Indirect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구분에서 유의할 점은 투자자가 직접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투자로 인정되고, 경영참여와 무관한 경우에는 간접투자로 인정됩니다(Circular 5 제5조 참조).

2. 직접투자계좌의 개설

외국인투자법인은 베트남에서 외국환거래 업무 인가를 받은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화 표시 계좌 및 동화 표시 계좌로 직접투자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종래 자본금계좌는 외화 표시 계좌로만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규정은 외화 표시 계좌와 동화 표시 계좌 중 어느 하나만 개설할 수도 있고 둘 모두를 개설할 수도 있도록 한 점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외화 표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거래 외화를 하나만 선택하여 1개의 외화 표시 직접투자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복수의 외화 표시 직접투자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외대출을 받는 외화가 기존 직접투자계좌의 통화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직접투자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역외대출금과 동일한 통화 표시의 직접투자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Circular 19 제6조 참조).

3. 자본금계좌에서 직접투자계좌로의 이관

종래 자본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외국인투자법인은 Circular 19의 발효일(2014년 9월 22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직접투자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계좌의 자금을 모두 직접투자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자본금계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사전 투자 비용

직접 투자를 통한 현지법인 설립(투자허가서 취득)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 준비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외국환거래 업무 인가를 받은 은행에 외화 표시 계좌(소위 "역외계좌")를 개설하고, 사전 투자 비용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자 비용을 역외계좌에 예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지출 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은행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현지법인 설립이 불발되거나 직접투자 거래가 해지될 경우 역외계좌에 예치한 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는 다시 본국으로 송금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사전 투자 비용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를 송금 은행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동화로 보유중인 금액은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 송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전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 해외 송금을 하여야 합니다(Circular 19 제10조 참조).

5. 유의 사항

기설립되어 자본금계좌를 개설한 외국인투자법인은 2015년 2월 21일까지 직접투자계좌를 개설하고 이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종래 자본금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었던 단기 대출금의 인출 및 원리금 상환도 향후에는 직접투자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 대출금에 관한 대출계약에서 정한 인출/상환 계좌를 직접투자계좌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2012년도 Circular 9에서는 은행이 차주에게 대출금을 송금(인출)할 때에 대출 목적상의 수익자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주가 물품공급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은 대출금을 차주에게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 공급자에게 송금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차주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는 특히 단기 대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은 단기 대출금의 수수도 직접투자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수익자에게 직접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한 Circular 9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중앙은행은 역내 단기 대출에 대해서는 직접투자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규정 개정 또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직접투자계좌는 외국인투자법인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만이 투자한 순수국내법인의 경우 직접투자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이 순수국내법인의 지분/주식을 양수할 경우에는 직접투자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베트남 감독기관은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 외국인 명의로 간접투자계좌를 개설하고 간접투자계좌를 통해 내국인인 양도인에게 양수도 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이 순수국내법인의 지분/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성격이 변화하는데, 그 이후에 배당금 송금 또는 지분/주식 양도와 같은 직접투자 성격의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 명의의 간접투자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인투자법인 명의로 직접투자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의 투자기획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명의의 간접투자계좌와 외국인투자법인의 직접투자계좌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해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투자계좌는 베트남 동화 표시 계좌로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외화 표시의 직접투자계좌와 간접투자계좌 간의 자금 이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유권해석이나 규정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새로운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 공표

지난 7월 1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2014년 수정판)」(이하 “네거티브 리스트”)가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2013년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하면 2014년 개정 리스트는 한층 개방되고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국제관례에 한 걸음 더 접근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는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여 14개의 관리조치를 취소하고 19개의 관리조치를 완화하였습니다.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수정초안 공표

지난 7월 3일, 국가공상총국은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이하 “규정”)을 개정하여 유명상표 사건에 대한 처리, 당사자 및 공상부서의 직책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총 21조로 구성되었는데 자세하게는 (i) 사건처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각 절차별 요건을 보완하고 (ii)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역할과 공상부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iii) 각 직책을 보다 세분화하여 보완하였으며 (iv) 유명상표사건에 대한 처리를 규범화하였습니다.

“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 공표

최근 국무원은 「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이하 “공시조례”)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공시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시조례의 발표와 시행은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의 순조로운 실시와 사후감독관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기업에게 진실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연도보고공시와 즉시 공시제도를 새로이 구축하였습니다. 동시에 공시조례는 신용규제시스템, 기업공시정보에 대한 추출검사제도를 구축하여 허위정보를 공시한 기업의 법적책임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전생산법” 개정안, 규정의 “집행”에 초점을

지난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안전생산법 개정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개정 안전생산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개정 안전생산법은 안전생산조치의 현실적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책임을 한층 강화하여 사고 발생 기업은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최대 2000만 위안의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 기준 적용 중지¹

관련 규정 : Circular 20/2014 및 Decision 2279/QD-BKHCN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2014년 7월 15일자로 Circular 20을 공표하고 2014년 9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중고기계 자산, 설비, 공정라인의 수입조건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Circular 20에 의하면,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산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산일 것.

둘째, 기계나 설비는 최초 품질의 80% 이상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것.

둘째 조건에서 품질은 정성적인 요소로 기준 및 평가 방법이 모호하므로, 이 조건은 대체로 내용연수가 80% 이상 남아있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중고 공정라인 전체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베트남 유관기관에 제출한 수입신청서류에 중고 공정라인의 사용목적과 목록이 구체적으로 구분 표시될 것.

둘째, 유관기관의 추가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요구조건을 충족할 것.

셋째, 중고 공정라인의 수출국에서 수출 선적 전에 공정라인의 가동상태가 사전 점검될 것.

위 조건의 충족 여부를 소명하기 위해 중고기계, 설비 수입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조일 표시 확인서류

¹ 이번 베트남 최신 해외정보는 조성룡 회계컨설팅법인의 조성룡 대표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② 베트남이 지정한 인증기관 또는 적격한 해외인증기관의 수입자산의 점검 인증서
- ③ 공정라인의 경우, 베트남 투자허가기관에 제출한 feasibility study 및 유관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허가서

Circular 20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중고자산을 수입(구입, 현물출자, 임차 포함)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반발이 제기되었고, 추가 투자 감소를 우려한 베트남 정부는 8월 29일자 Decision 2279를 통해 Circular 20의 시행 정지를 공표하였습니다.

Circular 20을 제정하기 전 2013년 8월에는 품질에 미달하는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을 금지하는 총리령(Directive No. 17/CT-TTg)이 공표되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중고기계의 수입기준을 정하기 위해 Circular 20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Circular 20의 효력이 중단됨으로써,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기준이 다시 불명확해진 상황이며, 추후 새로운 기준이 제정되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상사중재센터(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중재규칙 제정

캄보디아 상사중재센터(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이하 "NCAC")는 2014년 7월 11일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제정된 NCAC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신청을 한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선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중재에서 사용될 언어도 크메르어가 아닌 외국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준거법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특히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 재판부가 변론 없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신속한 중재 진행이 가능합니다. 크메르어로만 변론이 진행되는 캄보디아 법원과 달리 외국인의 진행 참여가 가능해 향후 체결될 많은 캄보디아 관련 국제계약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NCAC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인도네시아 ■

저작권법 개정

2014년 9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저작인격권에서는 저작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을 부여하였고 저작재산권에서는 저작의 출판, 복제, 번역, 변형 등의 형태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권리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구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비디오게임, 전통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변형/수정물, 디지털형식으로 제작된 데이터 또는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공동저작권자 등이 공동저작권관리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공동저작물의 이익 분배 등을 할 수 있도록 "one stop royalties collection"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사교육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정" 발효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는 "Regulation No. 69 of 2014"를 발효하여 외국인 투자를 받은 사교육 서비스업 사업자(외국인 투자법인, PT PMA)는 교육문화부로부터 사교육 서비스업 운영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받은 직업 관련 사교육 서비스업 사업자의 경우 위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직업 관련 교육'은 컴퓨터, 외국어, 미용 및 기타 직업 관련 교육을 의미하여 이에 대한 사교육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BKPM(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으로부터 사업본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위 면허를 사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위 면허 취득을 위한 제출서류는 ① 외국인 투자법인의 정관 ② 지방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③ BKPM으로부터 받은 투자허가서입니다.